

2005년도 국가예산편성제도 개선

□ 지방양여금제도 폐지

현행	변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로정비(1조 9,134억) ○ 지역개발사업(7,562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교부세 (2조 6,696억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질오염방지(1조 3,419억) ○ 청소년사업(303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고보조금(1조 3,722억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지역개발사업(3,419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3,554억)

※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 소요재원을 '05~'08년까지 지방교부세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

▷ 5월중 행자부안 확정 → 12월중 확정공포

□ 지방교부세제도 개선

○ 특별교부세 규모축소

-현행 지방교부세의 9.09%에서 4%수준으로 낮추고

-현행 5개 사업 에서 2개 사업으로 축소

> 특정현안, 지역개발,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

> 재해대책, 지역현안은 존치

○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

-현행 내국세규모의 15%에서 18.3%로 상향조정

□ 국가보조금제도의 개선

○ 현행 국가보조금이 기존보조사업(71.4%)과 균특사업(28.2%)로 구분지원

○ 예산편성절차의 개선

-현행 보조금사업(상향식) : 시군→시도→중앙부처→기획예산처
(사업확정)

-균특사업(Top-down제도) : 기획예산처→지자체(예산신청한도액
통보, 자율적으로 예산신청)→중앙부처(신청금액 조정없이 검토의견만
제출)→기획예산처(주무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대로 예산편성)

○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내용

-지역개발사업과 지역혁신사업으로 구분시행

▷ 지역개발사업(약4조원)

-기획예산처에서 시·도별로 Top-down (4월중 예산한도액 설정
통보)

-시·군에서 대상사업을 도사업부서로 신청

-도 사업부서에서 사업우선순위 정하여 예산담당관실로 제출

-예산담당관실에서 시군별 사업비 조정하여 중앙부처로 신청

> 지역혁신사업(약1조원)

-기획예산처에서 중앙부처별로 Top-down

-예산신청은 현행 국비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시행